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된다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 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 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은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뜻뜻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기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

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업계 소견서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동판매기 산업계를 대변하는 본 협회에서는 귀부의 금번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제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업계는 합법적인 담배자판기 설치환경 확대를 진행하고자 담배자판기의 외부설치 규제의 가장 큰 원인인 청소년 흡연 조장 문제에 대해 성인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안을 마련하고, 귀부에 공식적인 「담배자판기 건전한 시장육성 방안 견의」 및 「공공장소 성인인식 담배자판기 설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귀부의 금번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처럼 간절한 산업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공공지역 흡연장소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철거토록 하는 초강력안의 입법이 공고됨으로 인해, 산업계는 큰 충격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배자판기를 아예 뿐리로 뽑아 유통기기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치 않겠다는 현행 검토 안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으로서, 과연 이 초강경 규제가 과연 어떠한 당위성과 명분으로 산업계의 간절한 자율대책을 일기에 뿐리 철만큼 적법성을 갖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보급된 60여만대의 담배자판기에

| 정책초점 ① |

대해 비접촉형 IC카드를 이용한 성인인식장치를 도입해 2008년까지 기존 담배자판기를 전량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유럽의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도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인식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조류는 근본적인 청소년 이용 차단 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하여 과거의 담배자판기가 끼쳤던 위해요인을 해결하고, 독자적인 유통장비로서 존재가치를 인정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의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유통장비로서 필수적인 자동판매기 존재가치를 아예 인정치 않겠다는 극약처방으로서 그 입법의 당위성과 목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담배구입 투트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유인판매보

다는 사용이 번거로운 까닭에 흡연억제 효과까지 있어, 담배자판기 설치로 인한 위해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 설치가 용인된 흡연구역내 담배자판기가 철수된다면 당장 산업적인 피해 역시 막대할 뿐 아니라, 향후 자판기 산업의 시장발전에 있어서도 크나큰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종합컨데 금번 흡연 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 산업계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하오니 산업계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수렴하시고,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뜻뜻하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길 강력 요청 드립니다.

유첨

담배자판기 건전한 시장육성 방안

1. 현행 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리고 그 세부 내용으로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 가능한 장소로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고 규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1조 (소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 ① 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구내소매인)

1. 구내소매인은 지상4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역,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백화점, 대형소매점(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수퍼 마켓, 편의점 등), 유흥주점영업소(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 규정된 영업점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보유한 영업소에 한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는 이를 일반 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2. 개정 관련규정 주요골자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 가능한 장소) 중
-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고 규정 삭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② (흡연구역내 담배자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흡연구역내 담배자판기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2. 담배자판기 전면철거 부당성.

1) 법적인 문제점

-현행 담배사업자법에는 담배자판기를 소매인의 사유재산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하위법령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박탈행위이며 상위법 우선의 법률 원칙에 있어서도 적용 불가.

2) 무책임한 행정 회피적 입법

-본 협회는 지난 해 1월, 당시 관련법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 담배자판기 설치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나 단,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는 규정에 대해

-현행 담배자판기가 자체내에 신분증 인식을 통해 성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성인인식장치를 채택해 청소년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채택된다면 위 조항에 완전 부합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7조의 해당구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담배자판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

-하지만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적법 불법여부를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이, 정부 금연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회신만을 내린 후, 이제 와서 문제시 되는 관련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흡연구역 전면 철거 조항을 입법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합법성이 인정되는 골치 아픈 조항에 대해 아예 삭제해 버려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행정회피적 입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음.

3) 세계적인 조류를 무시

-디지털 기술발달 시대에 있어 이제는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신하고, 각종 음성, 생체, 신분증 인식시스템 등의 각 생활분야 도입은 거부 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담배자판기에 있어 60만대이상의 제품이 보급되어 있는 일본은 청소년 흡연구역 예방을 위해 비접촉형 IC카드를 이용한 성인식별장치를 도입해 2008년까지 기존 담배자판기를 전량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본격 추진 중.

-유럽시장에 있어 담배자판기의 천국인 독일의 경우도

| 정책초점 ① |

향후 5년에 걸쳐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자,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 중.

-또한 스위스에서도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시스템을 부착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 중.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도 불구하고 국내처럼 담배자판기 자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법 추진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할 뿐더러, 명백히 본질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묘법을 인정치 않고 시대착오적 판단기준에 준거한 입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음.

4) 청소년 흡연율 억제를 통한 담배자판기 활용방안에 대한 제고 측면

-국내는 활발한 금연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 그 흡연율이 세계 2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편의점 등 기존 유인담배판매 루트를 통해서도 청소년이 어렵지 않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담배 구입 제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성인인식을 통해 성인에게만 판매되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 유인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

는 이상 담배구입 가능성은 제로(0%).

-이러 면에서 볼 때 담배유인 판매의 자판기로의 대체가 담배구입루트의 차단으로 청소년 흡연 억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아예 학교위생정화구역, 편의점 등의 로케이션은 유인판매를 금지시키고 자판기를 통한 판매만을 입법화시킨다면 그야말로 강력한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질의를 통해 향후 적극 검토의 필요성이 충분한 방안이라고 질의회신 받은 바까지 있음.

-분명컨데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확산은 청소년 담배구입루트 차단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 못할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으며, 여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담배자판기를 적극 지지하면 지지하지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임.

5) 국민건강과 담배자판기의 상관관계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기존 유인판매를 대체, 흡수하게 된다면 흡연욕구 유발 측면보다는 담배 1갑 구입을 위해 신분증 인식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담배자판기 이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

-결국 담배자판기는 꼭 담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유인판매를 대신하여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지 우려할 정도의 흡연욕구를 증가시켜 흡연율 증가에 일조하는 유통기기로 볼 수 없음.

6) 담배판매, 획일적인 유인판매 만이 최선인가

-담배 소매인들은 대부분 본연의 주업과 병행하여 담배판매를 진행하는 현실에 미루어 볼 때 담배 유인판매에 따른 인력과 판매비용을 덜기 위해서는 점포 앞에도 담배자판기를 설치, 유인판매를 대체, 흡수 할 수 있게 해야 하나 현행법으로는 획일적인 대면판매만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유통구조의 대형화에 따른 소매점포의 감소,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 증가 요인과 점차 자동



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라이프 싸이를 변화요인을 고려 할 때 유인판매와는 차별화된 무인판매 구조를 인정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 담배자판기 외부설치가 합법화 된다 해도 이는 담배 유통구조의 확대로 연결되기보다는 기존 유인유통구조를 대체, 흡수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산업계 희망 관련법령 개정방향

1) 1단계

▶ 현 공공장소 흡연구역 담배자판기에 대한 합법적 설치인정

현행

3. 법 제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

개정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한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성인인식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에 한한다.

2) 2단계

▶ 소매인 관리가능 지역 전면 확대

현행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담배를 판매하는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개정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출입구 전면 등은 소매인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지역으로 성인인식장치를 채택해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4. 개정명분에 대한 산업계의 주장

청소년 위해요인을 근본적 해결한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경우, 설치반대 및 철거의 명분과 당위성이 사라졌으며, 담배자판기 설치로 인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요인은 오히려 유인판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전한 담배자판기 설치환경을 이제는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입법일 것임.

청소년보호위원회 건의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 방안 건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동판매기 산업계를 대변하는 본 협회에서는 귀위원회를 대상으로 원천적으로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성인인증 담배자판기의 적극 활용을 통한 청소년 흡연 감소 대책을 건의 드립니다.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에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만은 세계 2위, 아시아 1위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실로 국가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원인이 청소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인 현실에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흡연 억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청소년 흡연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채 청소년들은 어떻게든지 담배를 구입해 소비하고, 비양심적인 상인들은 현행 규제에 콧방귀를 뀌며 담배를 팔고 있고 때문입니다.

| 정책초점 ① |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은 점원들이 일일이 청소년 신분증 구별을 강제하기는 힘든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이기에 청소년 담배구입 차단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청소년으로부터 담배구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묘안은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연령인식을 통해 성인에게만 판매되는 담배자판기를 설치 의무화하고 유인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담배구입 가능성이 제로(0%)입니다.

과거에는 담배자판기가 청소년 담배구입의 취약지대로 지탄을 받으며 외부규제가 되었지만 새로운 성인인식기술을 적용한다면 청소년 흡연역제의 비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담배구입의 사각지대인 편의점이나 학교위생정회구역은 유인판매를 금지시키고 성인인식담배자판기 만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청소년 담배구입의 제1대상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현행 규제되어 있는 담배소매점 외부설치 규제를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면 기존의 유인판매는 판매효율과 청소년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판매로 대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정직하고 예외 없는 기계에 판매를 맡기는 일이 가장 속 시원한 청소년 흡연역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과거 담배자판기들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범으로 철퇴를 맞았다면 이제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성인인식자판기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 적극 설치를 독려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이럴 경우 여론에 있어서도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기보급된 60여만대의 담배자판기에 대해 비접촉형 IC카드를 이용한 성인인식장치를 도입해 2008년까지 기존 담배자판기를 전량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를 개발하여 시범운영에 들어 간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의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 있어서도 청소년 흡연 문제해결을 위해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흡연 감소대책은 이제 범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줄이고, 담배구입루트 차단을 위해서는 특히 청소년 보호의 직접대상기관인 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현행 관련법령 개선을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산업계의 바램인 바, 이러한 강력한 열망을 담아 건의를 드리오니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